

[별표 1] <개정 2002.4.12, 2006.5.3>

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11호관련)

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.

1. 제1종보호시설

- 가.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·놀이방·어린이놀이터·경로당·청소년수련시설·학원·병원(의원을 포함한다)·도서관·시장·공중목욕탕·호텔 및 여관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- 다. 극장·교회 및 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
- 라. 아동·노인·모자·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
- 마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보호시설

- 가. 주 택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